#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7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0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08.

다. 상 정·의 결 일 자 : 2019. 10. 16. 신업건설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27호, 2019.1.8.공포, 2019.7.9.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안 제10조)
- 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안 제22조)
-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함(안 제29조)
- 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갱신 횟수, 갱신 기간에 관 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의2)
  -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으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1) 기획감사담당과(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039호
    - 가) 예고기간: 2019. 8. 7. ~ 8. 27.(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5. 본 문: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27호, 2019.1.8. 공포, 2019.7.9.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 등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8. 토 론 : 없음.
- 9. 심사결과
  - 2019. 10.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